

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성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2126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8. 27.

발의자 : 김성수 · 임종성 · 이원욱
조웅천 · 이철희 · 황희
이상민 · 노웅래 · 박선숙
박광온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사실상 그대로 반영하여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했던 취지가 있음. 하지만, 실제 결격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이해관계 배척 기준인 원자력이용자 또는 단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등 임원의 결격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.

따라서, 임원 결격사유의 기준이 되는 원자력이용자 또는 기관을 명시하는 등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(안 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).

아울러, 임원 결격사유를 조사함에 있어 해당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신속한 선임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9조의2제3항 신설).

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(교원은 제외한다)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가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

를 받은 기관

나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

허가를 받은 기관

다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

정을 받은 기관

라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

4.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

(「과학기술기본법」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) 등 총

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

람

제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안전기술원은 임원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의2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<u>3.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,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</u></p>	<p>제9조의2(결격사유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(교원은 제외한다)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</u></p> <p>가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</p> <p>나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</p> <p>다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</p> <p>라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</p>

4.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,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

② (생략)

<신설>

4.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(「과학기술기본법」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)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안전기술원은 임원이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